

영등포구의회
제12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7. 5. 18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자 및 제출경과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 제안일 : 2007년 5월 4일
- 회부일 : 2007년 5월 8일

2 제안이유

- 급격한 고령화 사회진입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 등의 사회문제 해소차원에서,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경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경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2)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등

- 관련법령 : 별 첨
- 서울특별시 구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2006.11.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2007. 3. 8 ~ 3. 28(20일 간)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급격한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 등의 사회문제 해소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이 2006년 11월 1일 행정자치부에서 서울특별시를 거쳐 시달되어 우리구 의회에서 2007년 2월 8일 제126회 임시회에서 일부 개정하고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은 그 이후 관계법령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2007년 1월 11일 공포되어 2007년 4월 12일 시행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은

2007년 4월 11일 공포되어 2007년 4월 12일 시행으로

2007년 6월 1일 이전에 조례 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금년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함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와 자치입법 입안심사기준 등에 따른 용어순화, 자구정리 등 수정의견은

조·항·호 등의 표시는 가지번호가 있는 조문을 포함하여 한글과 아라비아숫자 사이는 붙여 쓰기 함으로

안 “제4조의 2” 조 표기를 “제4조의2”로 붙여 쓰기하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3”은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3”으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 2”는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로 붙여 쓰고

편집상의 이유로 자간을 벌려 쓰지 않으므로

“부 칙”은 “부칙”으로 붙여 쓰기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5. 18

보고자 : 김 완 섭

- 붙 임 :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관련법령 1부
3. 서울특별시 자치구 탄력세율 조례개정 추진현황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신 설> 제4조의 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붙임 2]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개정 1998.12.31>)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삭제 <1988.4.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98.12.31>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1. ~ 8. (생략)

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 함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8의3. ~ 11. (생략)

제9조 (설치 및 기능) ①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11>

1. ~ 4. (생략)

4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

5. ~ 7. (생략)

③ ~ ⑤ (생략)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연금의 방식 등) ①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3. 다음 각 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가. 제1호의 방식

나.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한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료비·교육비·주택유지수선

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4. 제2호의 방식과 제3호나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② 법 제2조제8호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란 65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7.4.11]

부칙 <제20002호,2007.4.11>

이 영은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00구세감면조례 표준안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준안 시달

- 세제과-12915(2006.11.1), 서울특별시장
- 지방세제팀-6609(2006.10.31), 행정자치부장관]

제7조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00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붙임 3]

서울특별시 자치구 탄력세율 조례개정 추진현황

(2007.4.12일 현재)

자치구명	2007년		2006년(20개구)		2005년 (15개구)	2004년 (20개구)
	표준세율	진행상황	적용율	신규여부		
종로	표준세율	'06년만 탄력세율 적용	△15%	신규	-	△15%
중구	표준세율	입법예고(4.11~4.30)	△40%	2005년 연장	△40%	△30%
용산	표준세율	입법예고(3.13~4.2)	△20%	2005년 연장	△20%	△20%
성동	표준세율	입법예고(3.12~4.2)	△10%	2005년 연장	△10%	△20%
광진	표준세율	입법예고(3.22~4.12)	△17%	2005년 연장	△10%	△10%
동대문	표준세율	입법예고(3.15~4.4)	△20%	신규	-	△20%
종각	표준세율	입법예고(3.21~4.11)	-	2005년 미연장	△20%	-
성북	표준세율	입법예고(3.6~3.26)	△20%	2005년 연장	△20%	△20%
강북	표준세율	입법예고(3.16~4.4)	△20%	2005년 연장	△20%	-
노원	표준세율	입법예고(4.4~4.24)	△20%	신규	-	△20%
마포	표준세율	방침 준비중(3.28 예고)	△20%	2005년 연장	△20%	△20%
양천	표준세율	입법예고(3.14~4.4)	△30%	2005년 연장	△30%	△20%
강서	표준세율	입법예고(3.14~4.4)	△20%	2005년 연장	△20%	△20%
구로	표준세율	입법예고(3.16~4.5)	△20%	2005년 연장	△20%	△20%
영등포	표준세율	입법예고(3.8~3.28)	△20%	2005년 연장	△20%	△25%
동작	표준세율	입법예고(3.26~4.16)	△20%	2005년 연장	△20%	△20%
관악	표준세율	입법예고(3.16~4.4)	△20%	2005년 연장	△20%	△20%
서초	표준세율	입법예고(3.3~3.28)	△30%	2005년 연장	△30%	△20%
강남	표준세율	'06년만 탄력세율 적용	△50%	신규	-	△30%
송파	표준세율	입법예고(3.17~4.3)	△40%	신규	-	△25%
강동	표준세율	입법예고(3.7~3.22)	△25%	신규	-	△20%

[붙임 4]

수정의견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신 설></p>	<p>제4조의 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제4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 ----- 제3조의3 ----- ----- ----- 제9조제2항제4호의2 ----- ----- -----</p>
	<p><u>부 칙</u></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u>부칙</u></p> <p>(개정안과 같음)</p>